

따뜻한 배려 희망찬 꿈 행복한 학교	조 동 가 정 통 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관련 주의 사항	http://www.jodong.es.kr
		☎ 472-301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 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관련 최근 언론보도 사항>

- ◆2명 올라탄 킥보드, 위험천만 주행... 경적울리니 되려 욕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량앞에 곡예 운행 중 경적울려 주의 하자 욕설 (SBS, 2023.12.05)
- ◆경남경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남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 까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로 198건 적발 및 조치 (연합뉴스, 2023.12.0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구분	내용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16세 이상 취득 가능)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 ○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밀면서 횡단

2024. 4. 29.

인 천 조 동 초 등 학 교 장

뒷면 참고



알고답시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01

무면허 운전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가능)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3만원

04

보행자 보호
불이행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5

지정차로 통행위반



등화점등 불이행
발광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06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